

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실시

-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5개 시·도에서 시범운영 추진 -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산, 대구, 울산, 경북, 경남 5개 시·도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시범운영 한다.

이 보수교육은 2024년 정식 시행을 앞두고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.

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 이수가 가능하다.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교육기관은 신청 기간('23.8.7.~18.) 내에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.

시범사업 참여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*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*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/ 알림·자료실/ 알림방/ 종사자교육 '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지침 및 보수교육기관 모집' 공고

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,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.

염민섭 노인정책관은 “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 라며, “이번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 분석을

통해 내실 있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운영 기준을 정립할 계획” 이라고 전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	책임자	과 장 임동민 (044-202-3510)
		담당자	사무관 박창배 (044-202-3511)
			주무관 배선희 (044-202-3519)



□ **추진배경**

-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필요성 제기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도입
 - *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22항에 보수교육 규정, 현재 하위법령 개정중(24.1.1. 시행 예정)
- 일부 지역 시범 운영을 통해 교육기관 지정 절차, 운영체계 등 점검 하여 본 제도 지침 마련 활용

□ **사업개요**

- (사업기간) 8월 ~ 10월(3개월) ※ 추진기관: 건보공단
- (사업지역) 5개 시도 (대구, 부산, 울산, 경북·남)
- (사업대상) 시범지역 장기요양기관 종사 요양보호사
- (운영개요) 교육기관 지정*을 통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
 - * (집합교육기관) 최근 2년 이내 요양보호사 교육 경험이 있는 기관·단체·법인 등, (온라인교육기관) 집합(대면) 교육기관 중 공단이 정한 온라인 교육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기관·단체·법인 등
 - (교육시간) 8시간 (4개 필수과정별 2시간씩 교육)
 - * (교육과정)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소양, 요양보호기초지식, 기본·특수 요양보호기술
 - (교육방법) 온·오프라인 교육 병행
 - * 온라인 교육 병행을 통한 근무 중 요양보호사 돌봄 공백 최소화하되,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온라인 교육 시간 제한 (최대 4시간)
 - (교육비용) 36,000원 (온라인 교육비 12,000원(4시간 기준))

□ **추진일정**

